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1.5.6>

보건신기술 인증서(제7조 관련)

제 호

보건신기술 인증서

1. 기 술 명:

2. 기술보유자:

3. 주 소:

4. 인 증 기 간:

위의 기술은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임을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 (인)